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이 개정(2026.8.11. 공포, 11.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보증의 방법 중 일부가 법률로 상향 입법되고,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은 국방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었는바,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된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관련 서식을 큰 글씨 서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 품질보증의 기준 및 방법 구체화 (제24조 개정)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방법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단계는 설계·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양산·구매 단계는 군수품이 국방규격(없는 경우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도록 명시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위탁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위 각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나. 큰 글씨 서식 개선 (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

라 신청서 서식(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관련 별지 제13호·제14호)에 큰 글씨 서식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개발 단계 : 연구개발 결과로 도출되는 설계, 시제품 등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
 2. 양산·구매 단계 : 군수품이 국방규격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국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에 따른 형상이나 계약요구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검사한다)
- ⑤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품질보증) ① <u>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u> 1. <u>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u> 2. <u>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u> 3. <u>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u> 4. <u>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 인지 여부</u>	제24조(품질보증) ① <u>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u> 1. <u>연구개발 단계 : 연구개발 결과로 도출되는 설계, 시제품 등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u> 2. <u>양산·구매 단계 : 군수품이 국방규격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국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에 따른 형상이나 계약요구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검사한다)</u> <u><삭 제></u> <u><삭 제></u>

② (생 략)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구체적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